제29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9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발의의안·····2면
○ 제29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검토보고서·····92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5. 11. 24.(월) 10:0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9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 1차 본 회 의 의 안

〈 의 안 목 록 〉	〈발의 및 제출자〉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성 주 군 수】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성 주 군 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경호의원외6인】
4.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화숙의원외6인】
5. 성주군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안	【이화숙의원외6인】
6. 성주군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교강의원외6인】
7. 성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김경호의원외6인】
8. 성주군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 조례안	【김성우의원외6인】
9.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식의원외6인】
10. 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노연의원외6인】
11. 성주군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차장 조성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장익봉의원외6인】
1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 주 군 수】
13. 성주군가족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성 주 군 수】
14. 성주군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성 주 군 수】
15. LPG배관망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2) 주요내용

○ 예산규모 : 652,670백만원

· 일반회계 : 588,100백만원

· 특별회계 : 64,570백만원

※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 별첨

3) 첨부서류

○ 2026년도 예산편성기준(기 제출)

○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참고자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2) 주요내용

○ 기금예산규모 : 15,330백만원
- 성주군인재육성기금 : 1,287백만원
- 성주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 3,226백만원
- 성주군자활기금 : 903백만원
- 성주군식품진흥기금 : 181백만원
- 성주군옥외광고발전기금 : 53백만원
- 성주군재난관리기금 : 2,063백만원
- 성주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 6,771백만원
- 성주군고향사랑기금 : 846백만원

※ 기금별 세입세출 내역 별첨

3) 첨부서류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5. 11. .
발 의 자 : 김경호, 이화숙, 구교강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회부 된 안건이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함.

2. 제안이유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참 고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화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5년 11월 일
발 의 자 :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1. 주 문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가. 출석일자 : 2025. 11. 25. / 11. 26. (2일간)

나. 출석장소 :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다. 출석대상 : 성주군수, 관계 공무원

출석일시	출석대상	비 고
2025. 11. 25.(화) 10:30	부군수, 농정과장, 도시계획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	
2025. 11. 26.(수) 10:30	관광과장, 주민복지과장, 축산과장, 경제교통과장, 기업지원과장, 건설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	

2. 제안이유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의 의견을 전달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29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51조,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참 고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제적의원 5분의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성주군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안

(이화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5.
발 의 자 :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1. 제정이유

성주군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예방접종의 종류(안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범위 설정(안 제3조～제4조)

다.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라. 접종 기관 및 위탁 운영 근거(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주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2.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 65세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2.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4조(지원기준) ① 선택예방접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포진 : 1회

② 예방접종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③ 제1항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비용) 군수는 예방접종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접종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 편의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접종신청 및 방법)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 및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고 그 소요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예방접종 신청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9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군수는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선택예방접종(대상포진) 신청서

신청인 (접종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주군 전입일	20 년 월 일	전화번호	
지원대상		☐ 성주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군민임. ☐ 대상포진 **기접종** 내역이 없음.		
접종백신		☐ 대상포진 **약독화 생바이러스** 백신 ☐ 본인은 **면역저하자**가 아님을 확인함.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사업명 : 성주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 사업
- 사업수행 기관 : 성주군 보건소
- 사업 운영 및 관리기관 : 성주군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선택 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및 수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집/휴대전화), 접종내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방접종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성주군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교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5.
발 의 자 : 구교강, 이화숙,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1. 제정이유

참외 재배에 필요한 수정벌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대상(안 제3조～제4조)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제7조)

3. 조례안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외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화분매개에 필수적인 수정벌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참외 재배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정벌"이란 참외 화분매개용으로 사용하는 벌을 말한다.
2. “참외 재배농가”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비닐하우스 내에서 참외를 재배하는 농가를 말한다.
3. “사양관리하는 농가”란 관내에서 참외의 화분 매개를 목적으로 벌을 생산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수정벌을 사양관리하는 농가에 대한 참외 화분매개용 수정벌의 지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수정벌을 사양관리하는 농가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은 수정벌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주군 수정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정벌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의 결정
2. 지원 품목 및 단가의 기준 설정
3. 수정벌 공급 관련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참외 재배농가 대표
2. 양봉농가 대표
3. 농업 관련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관련 부서 공무원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성주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① 제5조의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 내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지급 등) 군수는 기준 단가, 품질, 공급 시기 등에서 타 지역보다 군에 주소를 둔 양봉 농가가 우수하거나 동등할 경우, 해당 농가의 수정벌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0000년 참외 화분 매개벌 지원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4">신
청
인</td><td>농가주소</td><td colspan="5"></td></tr>
<tr><td>대표자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전화
번호</td><td></td></tr>
<tr><td>봉장주소</td><td colspan="5"></td></tr>
<tr><td>사육군수</td><td colspan="5">군</td></tr>
<tr><td rowspan="2">신청내용</td><td rowspan="2">사 업 량</td><td colspan="3">사 업 비 (천원)</td></tr>
<tr><td>계
(100%)</td><td>군 비
(%)</td><td>자부담
(%)</td></tr>
<tr><td>군</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사업비 입금계좌
(예금금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td><td colspan="3"></td></tr>
</table>

위와 같이 0000 년 참외 매개용 수정벌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신청내역 1부.

성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김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5.
발 의 자 : 김경호,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여노연
장익봉

1. 제정이유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주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청절차,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점검 및 보수, 이설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라. 고장신고 처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안 제15조~제16조)

3. 조례안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통행 환경과 야간생활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 이란 도로 폭 8m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 보안등” 이란 도로 폭 8m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연차별 설치 및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군수가 설치·관리하되, 한국전력공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 개설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 및 민간개발사업 지역 내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성주군과 협의하고, 설치 후에는 관련 서류와 함께 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명시설의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

업체가 시행할 것.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한다.

3. 가로등 및 보안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 간격으로 설치한다.

4.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며,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사건·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설치를 요청한 지역

2. 통행 주민 수가 많은 지역

3. 학교 주변 및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지역

4.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등) 밀집 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 여건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며, 복수 요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자체 조사 또는 주민 민원 등을 바탕으로 직접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성주군이 부담한다.

② 다만, 수혜자가 설치한 조명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리자 지정) 조명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는 해당 사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 또는 위탁기관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작성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② 각 조명시설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련번호가 기재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정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③ 조명시설의 보수는 군수가 자격을 갖춘 업체와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13조(이설 및 철거) ① 공공사업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부담하되,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훼손시설의 복구) 조명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경우, 해당 행위자는 신속히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제15조(고장신고 처리) ①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고장신고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수리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지보수업체와 협력하여 고장 신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를 부담하게 함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가로등 설치 신청서

설치 위치 (주소)	
가로등 수혜가구 및 주민수	
설치 필요성	
이장 의견 (주민 의견)	
비 고	

※ 첨부 : 설치지점 약도 1부, 주민 동의서 1부.

위와 같이 가로등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다수인 성명 : (인)

○○읍 . 면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가로등 설치 동의서

가로등 설치 (신설.이설) 위치	성주군 읍 . 면 리 번지 앞

본인 소유 토지(인근)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가로등으로 인한 제반문제(수면장애,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동의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인)	생년월일	
소유 토지 현황	성주군 읍 . 면 리 번지		

○○읍 . 면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가로등 관리대장

<table>
<tr><td>관리번호</td><td>설치위치</td><td>도로명</td><td>종류</td><td>용량(w)</td><td>점등방식</td><td>자산명</td><td>취득일자</td><td>취득금액</td><td>회계명</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수 리 현 황</td><td colspan="7" rowspan="18">(전 경 사 진)</td></tr>
<tr><td>일 자</td><td colspan="2">수리내역</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r>
</table>

[별지 제4호서식]

가로등 표찰

10cm	
성 주 군	4cm
제목(00읍·면)	2cm
번호(읍면- 1000)	6cm
☏:	2cm

[별지 제5호서식]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

접 수		신 고 자			신고사항	조 치 사 항			비 고
번호	월·일	성 명	주 소	연락처 (전화)		일 자	조치결과	회신일자	

성주군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 조례안

(김성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5.
발 의 자 : 김성우,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1. 제정이유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거주하며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귀농인의 집 정의, 적용범위, 사업신청자 선정 규정(안 제1～제4조)

나. 군수의 책무, 사용자 자격, 모집 및 선정 규정(안 제5～제7조)

다.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자 의무 및 손해배상, 사용의 제한 규정(안 제8～제12조)

라. 지도감독, 관리 및 운영 규정(안 제13～제14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및 해촉, 운영 규정(안 제15～제21조)

3. 조례안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귀농인의 집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건립한 귀농인의 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거주하며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사업신청자”란 개인·마을협의회·귀농귀촌협의회가 소유한 주택·부지를 귀농인의 집 활용 목적으로 7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리모델링 또는 이동식 주택 설치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귀농인의 집의 사용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되어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귀농인의 집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징수하는 요금(보증금 및 공공요금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귀농인의 집의 범위는 선정된 사업대상지로 한다.

제4조(사업신청자 선정) 사업신청자는 신청된 운영계획서에 따라 서면심사 후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용자가 성주군에

안정적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개선 및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 자격) 19세 이상인 성인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성주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성주군으로 전입한 지 2년 이내인 자로 한다.

제7조(사용자 모집 및 선정) ① 사용자는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하며 선정방식은 서류심사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6조를 충족한 자 중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8조(사용기간) ① 사용자의 사용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추가 사용자가 없고 기존 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사용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 제7조1항에 따라 선정된 사용자는 1년간 사용료를 사용 1일 전까지 사업신청자에게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보증금 및 공공요금 등)은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보증금은 사용기간이 끝나면 사용자에게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체납금, 수리비와 청소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반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④ 귀농인의 집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난방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초과 사용 시 사용자가 추가 납입하여야 하며, 잔여 금액이 있을 시 사업신청자가 정산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업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사용자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귀농인의 집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쾌적한 정주여건을 위하여 시설 내에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12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사용기간 중 주민등록 주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업신청자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관리 및 운영) ① 귀농인의 집의 관리 및 운영은 사업신청자가 한다.

② 관리기간은 조성 후 7년간으로 한다. 단, 관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신청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신청자는 보증금으로 귀농인의 집 유지보수 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귀농인의 집 효율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주군 귀농인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귀농인의 집 사용료에 관한 사항

2. 귀농인의 집 사업신청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농촌지원과장,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역 농업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귀농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5.
발 의 자 : 김종식,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여노연
장익봉

1. 개정이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보상기준을 현실화하고,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피해보상금 상한액 상향(안 제8조제1항)

나. 위원회 구성기준 세분화 및 전문성 강화(안 제13조제2항)

다. 피해방지단 구성시 야생동물관련단체 추천인원을 포함하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0조제3항)

3. 조례안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야생동물 관련 단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과장이 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당연직 : 기획예산실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인명피해의 경우에 한한다)

나. 위촉직 : 농업경영이나 야생동물 관련 단체 등에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0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구성하되, 야생동물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20조제3항 단서 중 “운영 시기”를 “운영 하며 시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6. (현행과 같음) 7. “야생동물 관련 단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8조(피해보상기준) ①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200만원까지로 한다. ② 사망한 경우의 보상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③ (생 략)	제8조(피해보상기준) ① ---------- 500만원----------. ② ---------- 1,000만원------.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설치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보건소장(인명피해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이외는 농업경영이나 야생동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3조(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과장이 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당연직 : 기획예산실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

	터소장, 보건소장(인명피해의 경우에 한한다) 나. 위촉직 : 농업경영이나 야생동물 관련 단체 등에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①·② (생 략) ③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을 따른다. 다만,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구성하되, 야생동물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운영 하며 시기----------.

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노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5.
발 의 자 : 여노연,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장익봉

1. 개정이유

주거밀집지역 인근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거리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물 승인 기준일을 연장하고 설치대상 및 요건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밀집지역 거리기준을 세분화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

나. 건축물 사용승인 기준일을 2025.12.31.로 연장

다. 설치 요건의 범위 확대 및 표현 정비

3. 조례안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7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7] <신설 2018.12.27., 개정 2019.10.10., 개정 2024.5.17. 개정 2024.6.20.>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제19조의3 관련)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거리기준은 지역·지구·구역의 경계 및 가장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산정한다.
 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영 제31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1) 5호 이상 10호 미만 : 350미터
 2) 5호 미만 : 200미터
 다.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 및 도 지정국가유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발전시설 대상지의 평균 경사도는 15도 이하(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면적의 4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로 하며, 입목축적은 성주군 평균 입목축적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자연경관 및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사. 자연의 보전,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에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시설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거리기준에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다.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4. 3호 나목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및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2025.12.31.까지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및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일 기준으로 성주군에 3년 이상 연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 법인등록)가 아래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임차하여 설치할 수 없음
 1)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주목적대로 3년 이상 이용한 경우
 2) 성주군에서 3년 이상 관련 시설을 운영 또는 관리한 자로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주목적대로 1년 이상 이용한 경우

5. 4호에 따른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나. 영 제31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의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 200미터를 이격한 후 주택수당 30미터를 더한 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영 제31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적용한다. 1) 5호 이상 10호 미만 : 350미터 2) 5호 미만 : 200미터
가.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가.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한다. 또한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주변지역에 일조 피해 발생 등이 없어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및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2019.12.31.까지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및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2025.12.31.까지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소,돼지만 해당한다)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일 기준으로 성주군에 3년 이상 연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 법인등록)가 아래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임차하여 설치할 수 없음 1)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주목적대로 3년 이상 이용한 경우 2) 성주군에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주목적대로 1년 이상 이용한 경우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및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일 기준으로 성주군에 3년 이상 연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 법인등록)가 아래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임차하여 설치할 수 없음 1)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주목적대로 3년 이상 이용한 경우 2) 성주군에서 3년 이상 관련 시설을 운영 또는 관리한 자로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주목적대로 1년 이상 이용한 경우 5. 4호에 따른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성주군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차장 조성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장익봉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5.
발 의 자 : 장익봉,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장익봉

1. 제정이유

태양광 발전시설과 주차장을 복합적으로 조성·운영함으로써 한정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 기반을 조성하며, 추가 발생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주차장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차장 조성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주차장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용주차장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란 주차장 공용화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전소 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갖춘 발전소를 말한다.

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백미터 이내에 속하는 행정리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주차장에 대해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차장 공용화 계획을 제출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사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계약 체결, 사용허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제4조(주차장공용화계획서 제출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서식에 따른 주차장 공용화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시설 설치 계획

2. 주차장 공용목적의 활용계획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제출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획 등

②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건립 지원에 따른 추가 발생 수익의 일부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하여 추가 발생 수익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다.

제5조(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주차장 활용) 군수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주차장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성주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주차장 공용화 계획서(제4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업개요	소유자			
	위 치			
	면 적	㎡	지 목	
	개시일시		주차가능대수	

「성주군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차장 조성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주차장 공용화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성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주차장 시설 설치 계획
2. 주차장 공용목적의 활용계획
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획
4. 주민과의 상생 계획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 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3호

2. 주요 사업

가.「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1) 목적 및 용도

- 초전면 주민의 다양한 욕구 반영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경관정비사업을 통해 정주만족도를 상승시키고 인구유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2024. 1월 ~ 2028. 12월

3) 소요예산

- 30,200백만원(매입비 등 / 일반회계)
· 주한미군사업 : 27,200백만원(국비 50% / 도비 5% / 군비 45% / 일반회계)
· 기초생활거점사업 : 3,000백만원(국비 70% / 군비 30% / 일반회계)

4) 사업규모

- <토지매입> 8,509㎡
- <건물신축> 연면적 3,814㎡(지상 4층), 부지면적 5,815㎡

5) 사업내용

- 어울림복합타운 : 22,000백만원(주한미군 19,000, 기초생활거점 3,000)
 · 보건지소, 어린이집, 주민교류공간 등 ※ 추진위원회 회의 후 반영
- 경관정비사업 : 8,200백만원(주한미군)
 · 면사무소 창고, 주차장 및 공원 조성, 가로경관·도로정비 등

※ 주민역량강화사업(SW) : 1,000백만원(기초생활거점)

6) 기준가격명세

(단위 : ㎡ , 백만원)

연번	구분	방법	대상	위치		면적	기준가격	비고
토지	합계			15필지		8,509	1,727	
1	소계			7필지		2,694	574	경관정비사업 (공원, 주차장 등 2,694㎡)
	취득	매입	토지	초전면 대장리	688-3	2,096	455	
					584-19	159	36	
					584-20	122	27	
					584-24	13	1	
					585-4	73	15	
					585-5	175	36	
					585-7	56	4	
2	소계			8필지		5,815	1,153	어울림복합타운 (5,815㎡)
	취득	매입	토지	초전면 대장리	689-1	504	92	
					689-2	1,367	250	
					689-3	1,269	232	
					690-1	562	129	
					690-4	932	202	
					690-8	69	4	
					690-11	847	193	
					691-4	265	51	
건물	합계			1개소		3,814	15,740	
3	취득	신축	건물	초전면 대장리	689-1	3,814	15,740	어울림복합타운

7) 계약방법

- <토지매입> 협의매입 / <건물신축> 공개경쟁입찰

8) 추진현황 및 계획

- 2025. 5.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 2025. 11. :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 2025. 12. : 토지보상 및 설계공모
- 2026. 6. : 공사 착공
- 2028. 12. : 공사 준공

나.「수륜면 복지회관 시설개선 및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

1) 목적 및 용도

- 수륜면 복지회관 이용 회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복지회관 시설이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 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동적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교류와 화합은 물론, 문화생활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함

2) 사업기간

- 2025. 11월 ~ 2027. 12월

3) 소요예산

- 2,000백만원(건축비 등 / 지방소멸대응기금 100% / 일반회계)

4) 사업규모

- <건물증축> 연면적 240㎡(지상 2층), 부지면적 1,768㎡

 ※ 군유지 부지에 기존 건물 수평 증축

5) 사업내용

- 주민체육시설 : 체력단력실, 탈의실, 샤워시설 등
- 커뮤니티공간 : 사무실, 동아리실 등
- 기존시설 리모델링 : 노후화된 시설 개선 등

6) 기준가격명세

(단위 : ㎡ , 백만원)

구분	방법	대상	위 치	연면적	기준가격	비고
취득	증축	건물	수륜면 신파리 57-1, 57-32	240	2,000	군유지

※ 건물증축의 기준가격은 건축비임

7) 계약방법

- <건물증축> 공개경쟁입찰

8) 추진현황 및 계획

- 2025. 8. : 사업기본계획 수립
- 2025. 11. : 공유재산심의회 및 수시분 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 2025. 12. : 추경 예산 편성
- 2026. 1. : 공공건축사전검토, 건축심의
- 2026. 4. : 설계용역 착수
- 2027. 1. : 공사 착공
- 2027. 12. : 공사 준공

다.「농기계테스트베드 시설 및 스마트팜 실증시험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 목적 및 용도

- 농기계테스트베드 시설사업이 부지매입 부진 및 사업비 증가에 따라 사업이 중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매입한 부지를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자 함.

2) 사업명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설치사업」으로 변경

3) 사업기간

- 2022. 9월 ~ 2026. 12월

4) 소요예산

- 당초 : 5,840백만원(국비 10%, 군비 56%, 기금 34% / 일반회계)

 ※ 집행액 1,344백만원, 반납액 3,356백만원, 미확보액 1,140백만원

- 변경 : 1,032백만원(국비 9%, 군비 60%, 기금 31% / 일반회계)

구 분	사업비(백만원)		비고
	당초	**변경**	
합계	5,840	**1,032**	
부지매입	2,700	832	
테스트베드	2,000	-	
실증시험포장	340	200	
건물 신축	800	-	

5) 사업규모

- <토지매입> 10,120㎡ / <실증시험포장 설치> 2,026㎡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	39,269㎡	10,120㎡	
농기계테스트베드	28,469㎡	-	
실증시험포장	9,300㎡	2,026㎡	시설하우스(3동), 기반공사, 스마트팜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등
건물 신축	1,500㎡	-	
기타	-	8,094㎡	

6) 기준가격명세

- 당초안

(단위 : ㎡ , 백만원)

연번	구분	대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비고
계				16필지		39,269	1,289.3	
1	당초	토지	대가면 옥성리	산18	임야	4,760	11	
2				산17-1	〃	1,127	2	
3				산17-3	〃	13,771	28	
4				산17-7	〃	1,108	2	
5				산15-5	〃	1,457	3	매입완료
6				산20	〃	3,407	7	
7				산20-1	〃	163	0.3	
8				216	전	2,026	81	매입완료
9				216-1	〃	1,755	58	매입완료
10				216-2	〃	1,164	39	일부지분매입
11				242-3	〃	1,807	55	일부지분매입
12				242	〃	2,205	63	매입완료
13				242-2	〃	1,477	39	매입완료
14				213-1	묘	570	19	
15				213-2	전	1,359	45	
16				213-3	전	1,113	37	
17		건물	〃	산 18	신축	1,500	800	

- 변경안

(단위 : ㎡ , 백만원)

연번	구분	대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비고
계				7필지		10,120	281	
1	변경	토지	대가면 옥성리	산15-5	임야	1,457	3	
2				216	전	2,026	81	
3				216-1	〃	1,755	58	
4				242	〃	2,205	63	
5				242-2	〃	1,477	39	
6				216-2	〃	470	15	
7				242-3	〃	730	22	

※ 당초 소요예산 매입토지(환매 후 잔여필지) : 7필지 10,120㎡

- 매입된 토지 중 옥성리 216번지 2,026㎡에 실증시험포장 설치
- 그 외 옥성리 산15-5번지 외 5필지는 8,094㎡는 현재 활용방안 검토중

7) 계약방법

- <토지매입> 협의매입 / <실증시험포장> 공개경쟁입찰

8) 추진현황 및 계획

- 2022. 11. : 22년 수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완료
- 2022. 11. : 23년 정기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
- 2022. 11. : 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 2023. 4. : 용지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경상북도개발공사)
- 2023. 8. : 기본계획 용역 완료
- 2023. 9. : 감정평가 및 협의취득 실시
- 2024. 9.~11. : 재감정 및 협의취득 실시
- 2024. 12. : 부지매입 부진 등에 따른 사업 중지 및 변경 결정
- 2025. 1. : 당초사업 중지에 따른 매입 토지 환매절차 진행
- 2025. 2. : '26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예산신청(실증시험포장 조성)
- 2025. 10. : 실증시험포장 조성 사업비 확정(2억)
- 2025. 11. : 관리계획변경안 공유재산심의회 및 수시분 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 2025. 12. : 실증시험포장 설치 사업비(2억) 2026 본예산에 편성
- 2026. 1. : 설계 및 기반공사
- 2026. 4. : 공사 착공
- 2026. 8. : 공사 준공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부지				22	18,629	2,009,039	22	18,629	2,009,039	
		건물				2	4,054	17,740,000	2	4,054	17,740,000	
		기타										
	1. 매 입	부지				22	18,629	2,009,039	22	18,629	2,009,039	
		건물				2	4,054	17,740,000	2	4,054	17,740,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부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부지										
		건물										
		기타										
처분	계	부지										
		건물										
		기타										
	4. 매 각	부지										
		건물										
		기타										
	5. 양 여	부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부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부지										
		건물										
		기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총계	24건	22,683	19,749,039			
1	답	초전면 대장리 688-3	2,096	455,000	2026년 상반기	경관정비 사업	
2	대	초전면 대장리 584-19	159	36,000	2026년 상반기	경관정비 사업	
3	대	초전면 대장리 584-20	122	27,000	2026년 상반기	경관정비 사업	
4	답	초전면 대장리 584-24	13	1,000	2026년 상반기	경관정비 사업	
5	대	초전면 대장리 585-4	73	15,000	2026년 상반기	경관정비 사업	
6	답	초전면 대장리 585-5	175	36,000	2026년 상반기	경관정비 사업	
7	답	초전면 대장리 585-7	56	4,000	2026년 상반기	경관정비 사업	
8	답	초전면 대장리 689-1	504	92,000	2026년 상반기	어울림복합타운 건립	
9	답	초전면 대장리 689-2	1,367	250,000	2026년 상반기	어울림복합타운 건립	
10	답	초전면 대장리 689-3	1,269	232,000	2026년 상반기	어울림복합타운 건립	
11	답	초전면 대장리 690-1	562	4,000	2026년 상반기	어울림복합타운 건립	
12	답	초전면 대장리 690-4	932	129,000	2026년 상반기	어울림복합타운 건립	
13	답	초전면 대장리 690-8	69	202,000	2026년 상반기	어울림복합타운 건립	
14	답	초전면 대장리 690-11	847	193,000	2026년 상반기	어울림복합타운 건립	
15	답	초전면 대장리 691-4	265	51,000	2026년 상반기	어울림복합타운 건립	
16	건물	초전면 대장리 689-1	3,814	15,740,000	2028년 12월	어울림복합타운 건립	신축
	소계	16건	12,323	17,467,000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17	건물	수륜면 신파리 57-1, 57-32	240	2,000,000	2027년 12월	수륜면 복지회관 시설개선 및 증축	증축
	소계	1건	240	2,000,000		수륜면 복지회관 시설개선 및 증축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8	임야	대가면 옥성리 산15-5	1,457	3,000	2024년	실증시험포장 설치	
19	전	대가면 옥성리 216	2,026	81,000	2024년	실증시험포장 설치	
20	전	대가면 옥성리 216-1	1,755	58,000	2024년	실증시험포장 설치	
21	전	대가면 옥성리 242	2,205	63,000	2024년	실증시험포장 설치	
22	전	대가면 옥성리 242-2	1,477	39,000	2024년	실증시험포장 설치	
23	전	대가면 옥성리 216-2	470	15,847	2024년	실증시험포장 설치	
24	전	대가면 옥성리 242-3	730	22,192	2024년	실증시험포장 설치	
	소계	7건	10,120	282,039		실증시험포장 설치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매각대상수량	과표또는평가액	매각시기	매각사유	매수희망자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수량						
			해	당	없	음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부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교환대상 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취득		해	당	없	음				
		처분									
계	부지										
	건물	처분									
		취득									
	기타	처분									
		취득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부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부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 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양여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양여 대상 수량	과 표 또는 평가액	양여 시기	양여 사유 및 근거 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 량						
			해	당	없	음			
계	부지 건물 기타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참고자료

위 치 도(초전면 대장리 689-1번지 일원)



현장사진(초전면 대장리 585-7)



현장사진(초전면 대장리 688-3)



지적도(초전면 대장리 668-3 일원 / 대장리 585-7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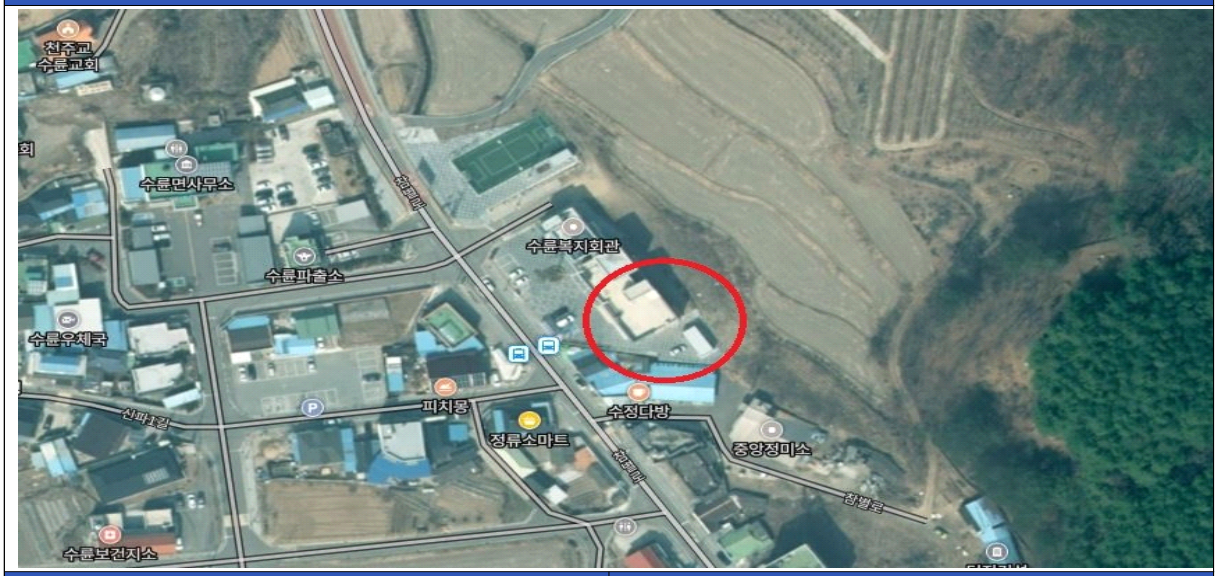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일반주거지역)



「수륜면 복지회관 시설개선 및 증축사업」 건물 취득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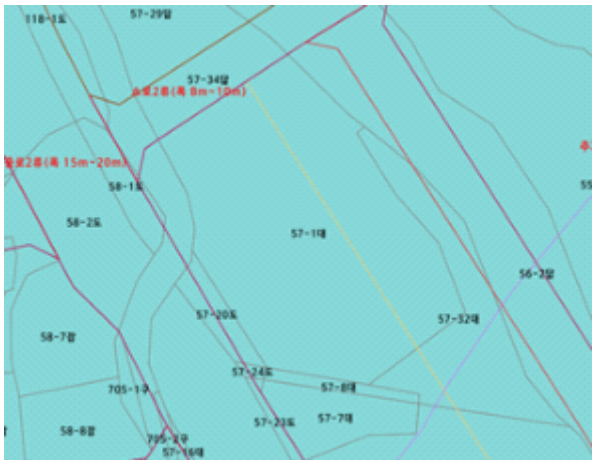
위 치 도(수륜면 신파리 57-1, 57-32번지)



지적도(신파리 57-1, 57-32)



토지이용계획도(계획관리지역)



현장사진-복지회관(신파리 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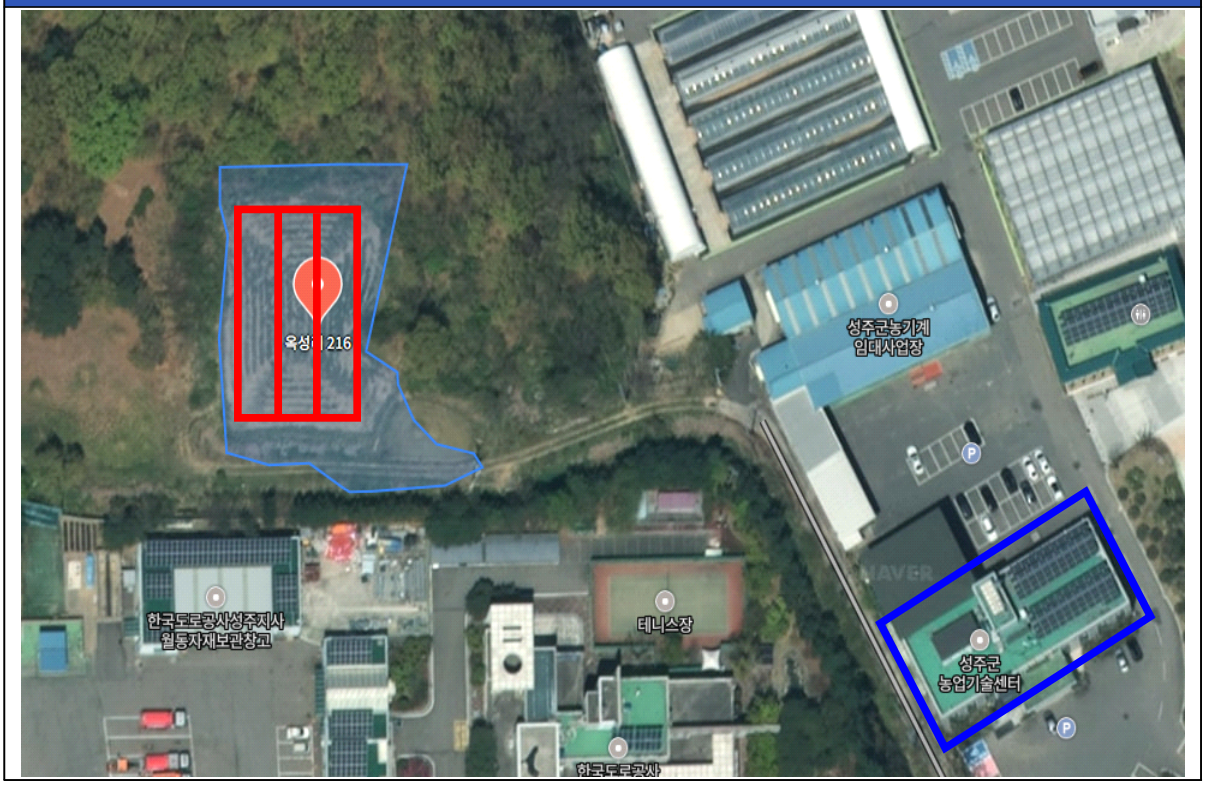


현장사진-야외화장실(신파리 57-32)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참고자료

위치도(옥성리 216)



현장사진(옥성리 216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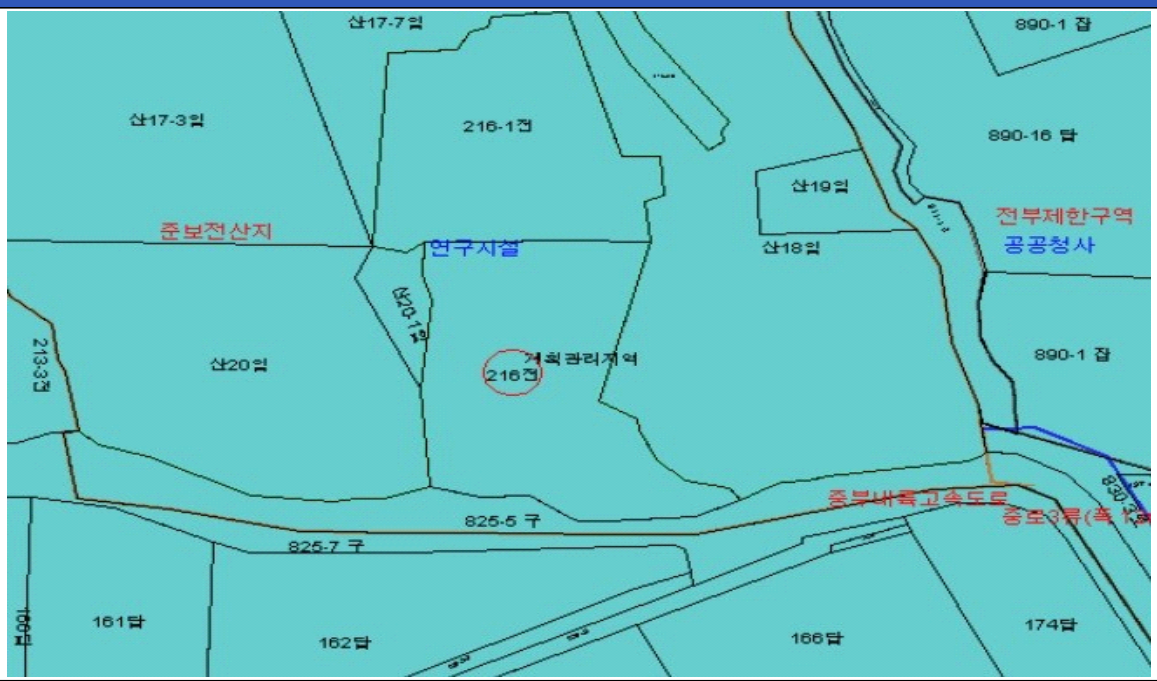
현장사진(옥성리 216번지 진입로)



지적도(옥성리 216번지 외)



토지이용계획(계획관리지역)



성주군가족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11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성주군가족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주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가족 복지서비스의 지속적·포괄적 제공을 위해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개요

1) 사 무 명 : 성주군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
2) 소 재 지 : 성주읍 경산길 17, 성주창의문화센터 B동 2층
3) 시설현황 : 연면적 788.11㎡
 - 사무실, 상담실, 공동육아나눔터, 문화교실, 취업지원실, 조리실 등
4) 종사자 현황 : 58명 (아이돌보미 포함) ※ 센터장:최연정
 - 센터장1명, 과장 및 팀장 각1명, 팀원 17명, 방문지도사3명, 아이돌보미 35명
5) 위탁기간 : 2026.03.01. ~ 2031.02.28.(5년)
6) 위탁방법 : 재계약
7) 현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대표 변상길)

나. 위탁사무 : 성주군가족센터 통합운영 전반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가족관계영역, 가족돌봄영역,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2) 아이돌봄지원사업(중앙부처 지정사무)
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K보듬사업, 성주군가족센터 시설물관리
4) 성평등가족부 시행 사업 수행
5) 여성대학운영
6)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 등과 관련하여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다. 연간운영비(산출근거) : 2,381백만원 (2025년 기준, 국 41%, 도 19%, 군 40%)
※ 중앙부처 지정사무인 아이돌봄사업(1,075백만원) 포함

3. 성과평가 결과

가. 평가일시 : 2025.09.25.~ 2025.09.26.

나. 평가방법 : 운영점검 및 성과평가 기준표에 의함(현장점검 ·서류심사)
※ 성과평가 기준표 : 공통분야(40점) + 개별분야(60점)

다. 평가내용 : 공통분야(사업계획, 인력관리, 예산관리, 성과관리)
개별분야(기관운영, 자원관리, 서비스, 만족도)

라. 평가점수 : 96점

마. 종합판단 : 재계약 적정

바. 총평

1) 코로나 시기에도 비대면 프로그램 활성화로 목표 성과 달성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률 증가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가족 포용성 향상
3) 개인정보 제한으로 전입 결혼이민자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4. 민간위탁(재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가. 운영주체의 공신력 : 법인 형태와 정관, 사업역량 등이 위탁 대상 시설의 성격과 부합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나. 가족센터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 가족센터 사업 지역특성 반영 및 주민참여, 지역사회 자원활용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확보

다. 법인대표 및 시설장 적정성 : 가족센터 운영 경험과 인력확보, 열의, 전문지식, 태도 등이 탁월

라. 법인의 재정능력 : 법인의 자산보유 적절

마. 기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5.10.30, 86점) 재계약 적정 판정

바. 종합판단 :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

5. 향후 추진계획

가. 2025년 12월 : 재계약 체결

나. 2026년 3월 : 재위탁 운영 개시

6. 참고사항

가. 사진대지

나. 비용추계서

다. 관계법령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2)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8조,제13조,제14조,제23조

3)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 제3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5)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2조

6)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사 진 대 지

관련법령 발췌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지침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② 군수는 최초 위탁 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소속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명 이내로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관련 분야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4.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실무경력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수준
2. 재정부담 능력,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 및 근로 조건
5.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신청서와 제13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23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가정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가정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문화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과 제③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따른다.

◈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3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의 서비스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비스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위 치 도


성주초등학교
성주군청
성주군청 제1주차장
코사마트
왕만두
BBQ치킨
성주무강병원
피자마루
경산아파트
CU
투다리
경산8리회관
형제수퍼
NH농협은행
마라본색
메가MGC커피
방아저씨
커피전빵
타타스베이글
감골식당
세븐일레븐
농협
성주군가족센터
고려한의원
배치과의원
허리케인식당
아시아마트
화성동물병원
파리바게뜨
새마을금고
정수추어탕
금수당
고향식당
성주중앙초등학교
성주영어체험센터
덕산의원
사랑지기노인복지센터
송천공나물국밥
성주여자고등학교
성주읍장로교회
서울침냉면
서울연합의원
성주우체국
성주문화원
새서울반점
다곡협동조합
김천세무서 성주민원실

□ 현 장 전 경



성주군가족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다양한 가족에 대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인력 운용으로 재정소요가 예상됨
- 성주군가족센터 종사자에 관한 임금·운영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은 성평등가족부 가족사업안내지침을 준용함
- 성주군가족센터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름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6년부터 성주군가족센터 사업 운영비를 산정하였으며, 추계기간은 5년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5년간 성주군가족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비용은 총 12,390백만원으로 연평균 2,478백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중앙부처 지정사무인 아이돌봄사업 포함)

나. 2차 연도부터 통합 운영비 매년 인상률 2%로 반영함.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a)		0	0	0	0	0	0
세출	○ 인건비	905	923	941	960	979	**4,708**
	○ 운영비	95	97	99	101	103	**495**
	○ 사업비	1,381	1,408	1,437	1,466	1,495	**7,187**
	소계(b)	2,381	2,428	2,477	2,527	2,577	**12,390**
□ 총 비용(a-b)		-2,381	-2,428	-2,477	-2,527	-2,577	**-12,39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976	996	1,015	1,036	1,056	5,079
도비	일반회계	452	462	471	480	490	2,355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시.군비		953	970	991	1,011	1,031	4,956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2,381**	**2,428**	**2,477**	**2,527**	**2,577**	**12,39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가족지원과 가족돌봄팀장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사무명			성주군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	비고
위탁금			12,390백만원(5년간)	
위 탁 금 세 부 내 역				
기간	항목	계(천원)	산 출 내 역	
2025년 기준	합계	2,381,142 (100%)	국 985,383(약41%) 도 451,446(약19%) 군 944,303(약40%)	
	인건비	904,528 (약38%)	· 급여 및 제수당 등(통합인력) : 45,697,640원 X 18명 ≒ 822,557,560원 ·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 급여 및 제수당 등 : 40,985,270원 X 2명 = 81,970,540원	
	운영비	96,671 (약4%)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용비, 차량유지비 등 : 96,670,750원 X 1식	
	사업비	1,379,943 (약58%)	· 가족관계사업(부모역할지원, 부부역할지원, 이중언어환경조성, 성주군자녀프로그램운영,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 20,000,000원 X 1식 · 가족돌봄사업(방문교육서비스, 온가족보듬사업, 열린맘임신출산서비스지원사업 등) : 69,810,000원 X 1식 · 가족생활사업(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일자리창출사업, 다문화가족자녀지원 등) : 102,736,050원 X 1식 ·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다문화이해교육,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가족친화프로그램, 여성대학운영 등) : 38,400,000원 X 1식 · 공동육아나눔터 : 20,554,640원 X 1식 · K보듬 6000 공동육아나눔터운영 : 135,000,000원 X 1식 · 아이돌봄지원사업 : 993,442,460원 X 1식	

성주군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2026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선정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술성,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 개요

가. 사 무 명 : 2026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시행지침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측량·설계·공사감리 등의 위탁)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1조(측량·설계·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 필요성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저수조, 용수로시설, 진입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적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고도의 기술력과 시공·관리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용수개발 등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의 위탁 시행이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 시행계획 수립, 세부설계, 공사발주 등 전반적인 사업시행

라. 위탁사무 개요(안)

○ 사 업 명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 위 치 :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가천면 중산리 일원

○ 사업규모 : 65ha(신파지구 30ha, 중산지구 35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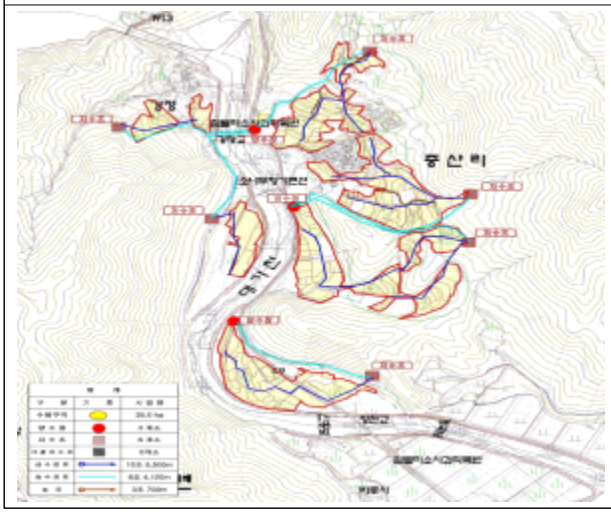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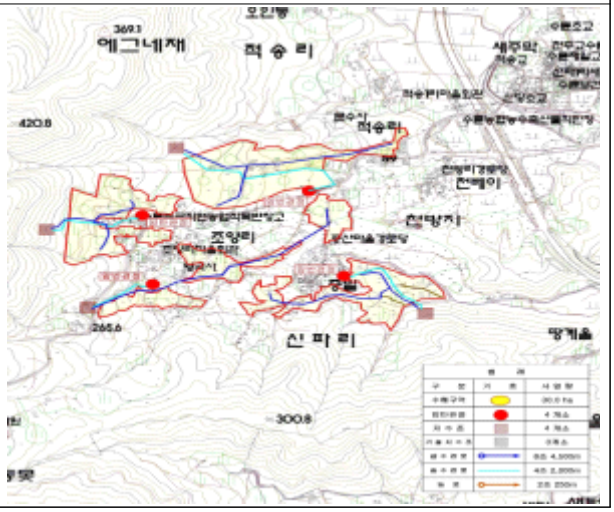
○ 사 업 비 : 3,055백만원(국비 2,444 도비 183 군비 428)

○ 사업내용

· 신파지구 : 암반관정·저수조·용수로시설 설치, 진입로 확충 등

· 중산지구 : 양수장·저수조·용수로시설 설치, 진입로 확충 등

○ 위치도

· 중산지구	· 신파지구
	

마. 위탁기간 : 2026. 1. 1. ~ 2027. 12. 31.(2년간)

바. 수 탁 자 : 공공기관

사. 소요예산 : 3,055백만원(국비 2,444 도비 183 군비 428)

○ 2026년도 : 917백만원(국비 734 도비 55 군비 128)

○ 2027년도 : 2,138백만원(국비 1,710 도비 128 군비 300)

아. 공공기관위탁 적정성 사전검토결과 : 적정

3. 향후 추진계획

가. 2025. 12월 : 위·수탁 협약 체결

나. 2026. 1월 : 사업시행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관련지침 및 법령 발췌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행지침

1. 사업신청단계

마.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관할 시.군과 공동으로 **예정지 답사를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나. 한국농어촌공사

○ **현지 조사를 통한 실무검토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주요 검토내용 : 지구집단화 정도, 기존 시설물 현황, 사업여건, 기부채납 등 주민호응도,사업시행주체와 출하약정 체결여부,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사업추진 상 문제점 등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조사자(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하 생략)는 답사보고서 및 예정지 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안) 작성**

다.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지구가 선정되면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측량 · 설계 · 공사감리 등의 위탁) ①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측량 ·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촌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측량 · 설계 · 공사감리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탁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요율(料率) 및 대가기준은 사업의 종류와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1조(측량 · 설계 · 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① 법 제1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 17., 2012. 5. 7., 2014. 5. 22., 2020. 1. 7., 2021. 9. 14.>

1. 한국농어촌공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기술사사무소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5.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법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술적 ·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설계업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5조제2항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 16.>

1. 한국농어촌공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 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공공기관 위탁 ·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 · 대행기관(이하"수탁 ·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대행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군수는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한다.

③ 군수는 최초 위탁·대행 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대행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위탁·대행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17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

9. 그 밖에 위탁 · 대행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기관 위탁 · 대행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위탁 · 대행을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공공기관 위탁 · 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기관 위탁 · 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수탁 ·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 · 대행기관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 · 대행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해당 공공기관 위탁 · 대행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준용한다.

2026년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2026년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을 공공기관 위탁 시행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공사비, 공공기관 위탁 수수료, 사업관리비 등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총사업비는 현재 계획된 국·도·군비 매칭 비율에 따라 확정된 3,055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 공사비, 관급자재대는 기존 동종사업 기준을 반영함
- 위탁수수료율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별표5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위탁요율 기준”에 따른 요율(10%)을 적용함
- 세부설계, 공사감리, 사업관리 요율은 한국농어촌공사 자체 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함[(공사비+관급자재대)*요율]
- 사업기간인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세외수입	-	-				-
	소계(a)	-	-				-
세출	○사업비	917	2,138				3,055
	소계(b)	917	2,138				3,055
□총 비용(a-b)		-917	-2,138				-3,05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734	1,710				2,444
도비	일반회계	55	128				183
	특별회계	-	-				-
	기금	-	-				-
시·군비		128	300				428
민간		-	-				-
기타		-	-				-
합계		917	2,138				3,055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농정과 참외팀장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부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3,055	
공사비	· 3,055백만원(총사업비) × 65% ≒ 2,000백만원	2,000	
관급자재대	· 3,055백만원(총사업비) × 17% ≒ 500백만원	500	
위탁수수료	· 2,000백만원(공사비) × 10% ≒ 200백만원	200	
세부설계 등	· 세부설계 – 2,500백만원(공사비+관급자재대) × 3.3% ≒ 82백만원 · 공사감리 – 2,500백만원(공사비+관급자재대) × 7.57% ≒ 189백만원 · 사업관리 – 2,500백만원(공사비+관급자재대) × 1.42% ≒ 35백만원	306	
기타	· 49백만원	49	

LPG배관망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5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된 성주군 읍면,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설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종합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재해예방과 시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제안 사유

가. LPG배관망 및 관련시설의 관리는 다양한 기술(가스, 시설안전, GIS, 시스템)이 필요하고 LPG라는 특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굴착공사,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나. 가스시설의 지속적인 점검, 안전관리 집중감시 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 공급사 관리감독 등을 통하여 LPG배관망 및 관련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시설관리의 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 관리하여 재해예방과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LPG배관망 안전관리 위탁
나. 위탁기간 : 2026.01.01. ~ 2029.12.31.(3년)
다. 위탁비용 : 81,700천원(연간)
라. 위탁내용 : LPG저장소 시설 및 매설배관 점검, 저장시설 모니터링, 공급사 관리감독 등

마. 위탁시설 : 7개소(읍면단위 1, 마을단위 6)

구 분	사업년도	규모	지역	연장(m)	세대수(명)	비고
1	2018	마을단위	삼산2리(모산)	821	41	
2	2020	〃	삼산1리(댕끝)	1,609	54	
3	2022	〃	성산1리(차동골)	1,213	51	
4	2023	〃	성원1리(황신)	1,862	84	
5	2024	〃	옥화2리(안터)	1,016	22	
6	2025	〃	예산2리(교촌)	1,759	67	11월 준공예정
7	2024~2025	읍면단위	초전면 대장1,4리	5,418	247	

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1) 심의일자 : 2025.10.21.

2) 심의내용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성과 측정의 용이성 등 8개 항목

3) 심의결과 : 가결(출석위원 7명 중 참석 6명)

4. 향후 추진계획

가. 수탁기관 선정 심의 : 2025. 12월 중

나. 위탁 시행 : 2026. 1월 중

5. 참고자료

가. 관련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지원기관의 지정 등)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의2(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4)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제6조(의회 동의)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련법령 발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원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 또는 사업 목적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의2(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법 제4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체계 조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집중감시 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유지 · 관리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주관기관 등)

① 주관기관은 보조금법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한다. 다만, 장관은 권역별 사업 통

합 수행 등 사업형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8.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운영 및 행정지원, 민원처리
9.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정산, 최종보고서의 제출
10. 시설 유지 · 보수 및 관리 등 사후관리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지원기관 지정)

③ 지원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의회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반복적 사무
3. 연간 위탁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무

LPG배관망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LPG배관망 안전관리 민간위탁 예정금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라. 작성자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5. 11. 24.(월) 10:0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9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 성주군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안	【이화숙의원외6인】
○ 성주군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교강의원외6인】
○ 성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구교강의원외6인】
○ 성주군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 조례안	【구교강의원외6인】
○ 성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교강의원외6인】
○ 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교강의원외6인】
○ 성주군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차장 조성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구교강의원외6인】
○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가족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성 주 군 수】
○ LPG배관망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성주군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예방접종의 종류(안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범위 설정(안 제3조～제4조)

다.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라. 접종 기관 및 위탁 운영 근거(안 제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군민의 건강 수준 제고 및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참외 재배에 필요한 수정벌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대상(안 제3조～제4조)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제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참외 재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화분매개용 수정벌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사양관리 농가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참외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참외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 및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주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청절차,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점검 및 보수, 이설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라. 고장신고 처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안 제15조～제1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관리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조명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특히 신청절차, 설치 우선순위, 정기점검 및 보수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민원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명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주민 생활안전 강화 및 조명시설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거주하며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귀농인의 집 정의, 적용범위, 사업신청자 선정 규정(안 제1～제4조)

나. 군수의 책무, 사용자 자격, 모집 및 선정 규정(안 제5～제7조)

다.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자 의무 및 손해배상, 사용의 제한 규정(안 제8～제12조)

라. 지도감독, 관리 및 운영 규정(안 제13～제14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및 해촉, 운영 규정(안 제15～제21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체류하며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농촌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입주대상자 및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간·사용허가 절차·사용자의 의무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귀농인의 집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귀농·귀촌 인구 유입 촉진 및 농촌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보상기준을 현실화하고,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피해보상금 상한액 상향(안 제8조제1항)

나. 위원회 구성기준 세분화 및 전문성 강화(안 제13조제2항)

다. 피해방지단 구성시야생동물관련단체추천인원을포함하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0조제3항)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보상기준을 현실화하고,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피해방지단 구성 시 야생동물 관련 단체의 참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주거밀집지역 인근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거리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물 승인 기준일을 연장하고 설치대상 및 요건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밀집지역 거리기준을 세분화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

나. 건축물 사용승인 기준일을 2025.12.31.로 연장

다. 설치 요건의 범위 확대 및 표현 정비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거리기준을 세분화하고, 건축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들이 발전시설을 활용해 부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주민의 수익기반 확대와 발전시설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주군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차장 조성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태양광 발전시설과 주차장을 복합적으로 조성·운영함으로써 한정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 기반을 조성하며, 추가 발생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주차장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과 주차장을 복합적으로 조성·운영함으로써 한정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설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며, 추가 발생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 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3호

2. 주요 사업

가.「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조성사업」토지 및 건물 취득

1) 목적 및 용도

- 초전면 주민의 다양한 욕구 반영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경관정비사업을 통해 정주만족도를 상승시키고 인구유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2024. 1월 ~ 2028. 12월

3) 소요예산

- 30,200백만원(매입비 등 / 일반회계)

· 주한미군사업 : 27,200백만원(국비 50% / 도비 5% / 군비 45% / 일반회계)

· 기초생활거점사업 : 3,000백만원(국비 70% / 군비 30% / 일반회계)

4) 사업규모

- <토지매입> 8,509㎡

- <건물신축> 연면적 3,814㎡(지상 4층), 부지면적 5,815㎡

5) 사업내용

- 어울림복합타운 : 22,000백만원(주한미군 19,000, 기초생활거점 3,000)

· 보건지소, 어린이집, 주민교류공간 등 ※ 추진위원회 회의 후 반영

- 경관정비사업 : 8,200백만원(주한미군)

· 면사무소 창고, 주차장 및 공원 조성, 가로경관·도로정비 등

※ 주민역량강화사업(SW) : 1,000백만원(기초생활거점)

6) 기준가격명세

(단위 : ㎡ , 백만원)

연번	구분	방법	대상	위치		면적	기준가격	비고
토지	합계			15필지		8,509	1,727	
1	소계			7필지		2,694	574	경관정비사업 (공원, 주차장 등 2,694㎡)
	취득	매입	토지	초전면 대장리	688-3	2,096	455	
					584-19	159	36	
					584-20	122	27	
					584-24	13	1	
					585-4	73	15	
					585-5	175	36	
					585-7	56	4	
2	소계			8필지		5,815	1,153	어울림복합타운 (5,815㎡)
	취득	매입	토지	초전면 대장리	689-1	504	92	
					689-2	1,367	250	
					689-3	1,269	232	
					690-1	562	129	
					690-4	932	202	
					690-8	69	4	
					690-11	847	193	
					691-4	265	51	
건물	합계			1개소		3,814	15,740	
3	취득	신축	건물	초전면 대장리	689-1	3,814	15,740	어울림복합타운

7) 계약방법

- <토지매입> 협의매입 / <건물신축> 공개경쟁입찰

8) 추진현황 및 계획

- 2025. 5.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 2025. 11. :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 2025. 12. : 토지보상 및 설계공모
- 2026. 6. : 공사 착공
- 2028. 12. : 공사 준공

나.「수륜면 복지회관 시설개선 및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

1) 목적 및 용도

- 수륜면 복지회관 이용 회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복지회관 시설이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 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동적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교류와 화합은 물론, 문화생활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함

2) 사업기간

- 2025. 11월 ~ 2027. 12월

3) 소요예산

- 2,000백만원(건축비 등 / 지방소멸대응기금 100% / 일반회계)

4) 사업규모

- <건물증축> 연면적 240㎡(지상 2층), 부지면적 1,768㎡

 ※ 군유지 부지에 기존 건물 수평 증축

5) 사업내용

- 주민체육시설 : 체력단력실, 탈의실, 샤워시설 등
- 커뮤니티공간 : 사무실, 동아리실 등
- 기존시설 리모델링 : 노후화된 시설 개선 등

6) 기준가격명세

(단위 : ㎡ , 백만원)

구분	방법	대상	위 치	연면적	기준가격	비고
취득	증축	건물	수륜면 신파리 57-1, 57-32	240	2,000	군유지

※ 건물증축의 기준가격은 건축비임

7) 계약방법

- <건물증축> 공개경쟁입찰

8) 추진현황 및 계획

- 2025. 8. : 사업기본계획 수립
- 2025. 11. : 공유재산심의회 및 수시분 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 2025. 12. : 추경 예산 편성
- 2026. 1. : 공공건축사전검토, 건축심의
- 2026. 4. : 설계용역 착수
- 2027. 1. : 공사 착공
- 2027. 12. : 공사 준공

다.「농기계테스트베드 시설 및 스마트팜 실증시험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 목적 및 용도

- 농기계테스트베드 시설사업이 부지매입 부진 및 사업비 증가에 따라 사업이 중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매입한 부지를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자 함.

2) 사업명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설치사업」으로 변경

3) 사업기간

- 2022. 9월 ~ 2026. 12월

4) 소요예산

- 당초 : 5,840백만원(국비 10%, 군비 56%, 기금 34% / 일반회계)

 ※ 집행액 1,344백만원, 반납액 3,356백만원, 미확보액 1,140백만원

- 변경 : 1,032백만원(국비 9%, 군비 60%, 기금 31% / 일반회계)

구 분	사업비(백만원)		비고
	당초	**변경**	
합계	5,840	**1,032**	
부지매입	2,700	832	
테스트베드	2,000	-	
실증시험포장	340	200	
건물 신축	800	-	

5) 사업규모

- <토지매입> 10,120㎡ / <실증시험포장 설치> 2,026㎡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	39,269㎡	10,120㎡	
농기계테스트베드	28,469㎡	-	
실증시험포장	9,300㎡	2,026㎡	시설하우스(3동), 기반공사, 스마트팜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등
건물 신축	1,500㎡	-	
기타	-	8,094㎡	

6) 기준가격명세

- 당초안

(단위 : ㎡ , 백만원)

연번	구분	대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비고
계				16필지		39,269	1,289.3	
1	당초	토지	대가면 옥성리	산18	임야	4,760	11	
2				산17-1	〃	1,127	2	
3				산17-3	〃	13,771	28	
4				산17-7	〃	1,108	2	
5				산15-5	〃	1,457	3	매입완료
6				산20	〃	3,407	7	
7				산20-1	〃	163	0.3	
8				216	전	2,026	81	매입완료
9				216-1	〃	1,755	58	매입완료
10				216-2	〃	1,164	39	일부지분매입
11				242-3	〃	1,807	55	일부지분매입
12				242	〃	2,205	63	매입완료
13				242-2	〃	1,477	39	매입완료
14				213-1	묘	570	19	
15				213-2	전	1,359	45	
16				213-3	전	1,113	37	
17		건물	〃	산 18	신축	1,500	800	

- 변경안

(단위 : ㎡ , 백만원)

연번	구분	대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비고
계				7필지		10,120	281	
1	변경	토지	대가면 옥성리	산15-5	임야	1,457	3	
2				216	전	2,026	81	
3				216-1	〃	1,755	58	
4				242	〃	2,205	63	
5				242-2	〃	1,477	39	
6				216-2	〃	470	15	
7				242-3	〃	730	22	

※ 당초 소요예산 매입토지(환매 후 잔여필지) : 7필지 10,120㎡

- 매입된 토지 중 옥성리 216번지 2,026㎡에 실증시험포장 설치
- 그 외 옥성리 산15-5번지 외 5필지는 8,094㎡는 현재 활용방안 검토중

6) 계약방법

- <토지매입> 협의매입 / <실증시험포장> 공개경쟁입찰

7) 추진현황 및 계획

- 2022. 11. : 22년 수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완료
- 2022. 11. : 23년 정기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
- 2022. 11. : 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 2023. 4. : 용지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경상북도개발공사)
- 2023. 8. : 기본계획 용역 완료
- 2023. 9. : 감정평가 및 협의취득 실시
- 2024. 9.~11. : 재감정 및 협의취득 실시
- 2024. 12. : 부지매입 부진 등에 따른 사업 중지 및 변경 결정
- 2025. 1. : 당초사업 중지에 따른 매입 토지 환매절차 진행
- 2025. 2. : '26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예산신청(실증시험포장 조성)
- 2025. 10. : 실증시험포장 조성 사업비 확정(2억)
- 2025. 11. : 관리계획변경안 공유재산심의회 및 수시분 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 2025. 12. : 실증시험포장 설치 사업비(2억) 2026 본예산에 편성
- 2026. 1. : 설계 및 기반공사
- 2026. 4. : 공사 착공
- 2026. 8. : 공사 준공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

○ 본 안건은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초전면 대장리 688-3 외 14필지에 해당하는 8,509㎡의 토지와, 초전면 대장리 689-1에 5,815㎡ 건물을 302억원에 매입·취득하려는 내용입니다.

○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의 정주 만족도 향상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함으로써, 초전면의 정주기반을 강화하고 중심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 있으므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수륜면 복지회관 시설개선 및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 >

○ 본 안건은 수륜면 복지회관의 시설개선 및 증축을 위하여 수륜면 신파리 57-1번지와 57-32번지 일원 부지(1,768㎡)에 연면적 240㎡ 규모(지상 2층)의 건물을 기존 건물과 수평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지역주민의 복지·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거점시설인 수륜면 복지회관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물을 증축·취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표됩니다.

< 「농기계테스트베드 시설 및 스마트팜 실증시험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

○ 본 안건은 기존 「농기계테스트베드 시설 및 스마트팜 실증시험포장 조성사업」이 부지매입 부진과 사업비 증가 등으로 추진이 중지됨에 따라, 이미 매입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사업 중단에 따른 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는 불가피한 행정조정의 성격을 가지나, 기존 매입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스마트농업 실증기반 확보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향후 미활용 부지에 대한 관리·활용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증시험포장 조성 이후에는 농가참여형 실증 프로그램 운영과 스마트팜 기술보급 확산 전략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주군가족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제안이유

성주군가족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주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가족 복지서비스의 지속적·포괄적 제공을 위해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개요

1) 사 무 명 : 성주군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

2) 소 재 지 : 성주읍 경산길 17, 성주창의문화센터 B동 2층

3) 시설현황 : 연면적 788.11㎡

- 사무실, 상담실, 공동육아나눔터, 문화교실, 취업지원실, 조리실 등

4) 종사자 현황 : 58명 (아이돌보미 포함) ※ 센터장:최연정

- 센터장1명, 과장 및 팀장 각1명, 팀원 17명, 방문지도사3명, 아이돌보미 35명

5) 위탁기간 : 2026.03.01. ~ 2031.02.28.(5년)

6) 위탁방법 : 재계약

7) 현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대표 변상길)

나. 위탁사무 : 성주군가족센터 통합운영 전반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가족관계영역, 가족돌봄영역,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2) 아이돌봄지원사업(중앙부처 지정사무)

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K보듬사업, 성주군가족센터 시설물관리

4) 성평등가족부 시행 사업 수행

5) 여성대학운영

6)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 등과 관련하여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다. 연간운영비(산출근거) : 2,381백만원 (2025년기준, 국 41%, 도 19%, 군 40%)

※ 중앙부처 지정사무인 아이돌봄사업(1,075백만원) 포함

라. 수탁자 선정방식 :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계약 결정 (적정기준 70점 이상)

1) 성과평가결과 : 96점

- 기본사업, 예산 및 회계관리, 복무사항, 시설운영 등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 있음.

2)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 : 86점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96점)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평균 86점)에 비추어 볼 때, 위탁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능력,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가족지원서비스 운영의 전문성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주군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2026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선정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술성,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 개요

가. 사 무 명 : 2026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시행지침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측량·설계·공사감리 등의 위탁)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1조(측량·설계·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 필요성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저수조, 용수로시설, 진입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적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고도의 기술력과 시공·관리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용수개발 등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의 위탁 시행이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 시행계획 수립, 세부설계, 공사발주 등 전반적인 사업시행

라. 위탁사무 개요(안)

○ 사 업 명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 위 치 :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가천면 중산리 일원

○ 사업규모 : 65ha(신파지구 30ha, 중산지구 35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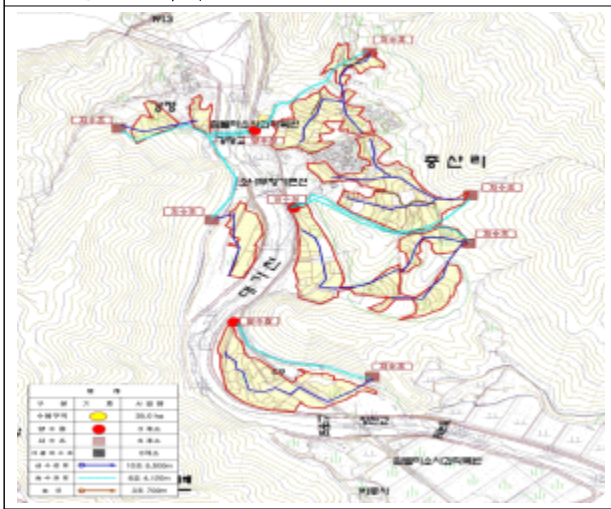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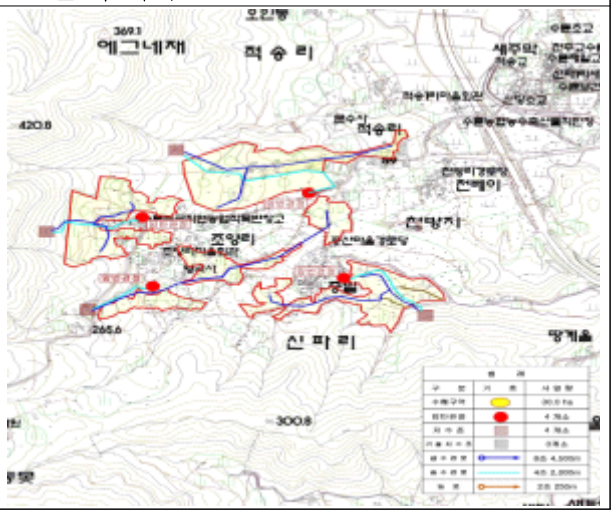
○ 사 업 비 : 3,055백만원(국비 2,444 도비 183 군비 428)

○ 사업내용

· 신파지구 : 암반관정·저수조·용수로시설 설치, 진입로 확충 등

· 중산지구 : 양수장·저수조·용수로시설 설치, 진입로 확충 등

○ 위치도

· 중산지구	· 신파지구
	

마. 위탁기간 : 2026. 1. 1. ~ 2027. 12. 31.(2년간)

바. 수 탁 자 : 공공기관

사. 소요예산 : 3,055백만원(국비 2,444 도비 183 군비 428)

○ 2026년도 : 916백만원(국비 734 도비 55 군비 128)

○ 2027년도 : 2,139백만원(국비 1,710 도비 128 군비 300)

아. 공공기관위탁 적정성 사전검토결과 : 적정

3. 향후 추진계획

가. 2025. 12월 : 위·수탁 협약 체결

나. 2025. 1월 : 사업시행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2026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사업 전반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사업 대상지인 신파지구(30ha)와 중산지구(35ha)는 용수 개발, 기반정비 등 종합적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 세부설계, 공사 발주 등 전 과정에서 전문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PG배관망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된 성주군 읍면,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설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종합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재해예방과 시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제안 사유

가. LPG배관망 및 관련시설의 관리는 다양한 기술(가스, 시설안전, GIS, 시스템)이 필요하고 LPG라는 특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굴착공사,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나. 가스시설의 지속적인 점검, 안전관리 집중감시 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 공급사 관리감독 등을 통하여 LPG배관망 및 관련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시설관리의 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 관리하여 재해예방과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LPG배관망 안전관리 위탁

나. 위탁기간 : 2026.01.01. ~ 2029.12.31.(3년)

다. 위탁비용 : 81,700천원(연간)

라. 위탁내용 : LPG저장소 시설 및 매설배관 점검, 저장시설 모니터링, 공급사 관리감독 등

마. 위탁시설 : 7개소(읍면단위 1, 마을단위 6)

구 분	사업년도	규모	지역	연장(m)	세대수(명)	비고
1	2018	마을단위	삼산2리(모산)	821	41	
2	2020	〃	삼산1리(댕끝)	1,609	54	
3	2022	〃	성산1리(차동골)	1,213	51	
4	2023	〃	성원1리(황신)	1,862	84	
5	2024	〃	옥화2리(안터)	1,016	22	
6	2025	〃	예산2리(교촌)	1,759	67	11월 준공예정
7	2024~2025	읍면단위	초전면 대장1,4리	5,418	247	10월 준공예정

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1) 심의일자 : 2025.10.21.

2) 심의내용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성과 측정의 용이성 등 8개 항목

3) 심의결과 : 가결(출석위원 7명 중 참석 6명)

4. 향후 추진계획

가. 수탁기관 선정 심의 : 2025. 12월 중

나. 위탁 시행 : 2026. 1월 중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복지 향상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된 LPG배관망 및 관련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LPG배관망은 저장소·배관·안전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 요소가 포함된 시설로서, 가스 누출, 굴착공사, 태풍 등 재해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상시 점검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 운영은 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재해예방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